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특정금전신탁 계약서_개정대비표

1. 대상 약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2.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3. 개정일 : 2025.09.01
4. 개정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 ~ 제28조 <생략>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u><신설></u>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31조 <생략> [별표1]~[별표2] <생략>	제1조 ~ 제28조 <좌동>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위탁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위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31조 <좌동> [별표1]~[별표2] <좌동>	공정거래 위원회 시정요청 사항 반영